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가. 생명보험업: 제1조의2제2항제1호의 보험상품

나. 손해보험업: 제1조의2제3항제6호, 제7호, 제9호 내지 제11호, 제13호 및 제14호의 보험상품

다. 제3보험업: 제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상품

2.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3.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금 상한액: 5천만 원

4.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500억 원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 원을 말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법 제11조의2제2항”을 “법 제11조의2제3항”으로 한

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는 법 제2조제2호 및 제175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별도로”를 “별도로 당해 사업연도 내에”로 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제3호를 제3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2(종전의 제3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제3호·제2항제14호의2·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을 “법 제115조제2항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14의2. 개인의 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및 악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③ 법 제1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사업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업무 및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하는 업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하는 업무

5.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하는 업무

6.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하는 업무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하는 업무

8. 그 밖에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1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① 법 제1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2. 생명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 중 하나 이상의 보험종목에 대해 허가받은 보험회사. 다만, 해당 보험종목을 취급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외부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는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없다.

1. 제63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2. 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

③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는 법 제1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공 및 접근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증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통지) 법 제1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서면
2.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

제7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3(신계약의 금지 예외) 법 제14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국내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2. 자회사인 보험회사와의 합병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제86조제7호 중 “다른 법령”을 “이 법 및 다른 법령”으로 한다.

제104조 중 “제6항”을 “7항”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의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17조의2 관련)

목적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본인·대리 확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동차운전면허증
가입자격, 대상확인	여권, 주민등록등초본, 국내거소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전입세대, 지방세납세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건강진단결과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축물대장,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증,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어선), 선박원부, 어선등록필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보험금 청구, 산정, 지급 관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축산업등록증,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설업등록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건축물사용승인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 위반건축물관리대장, 임대사업자등록증,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납세(국세) 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임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계약유 지, 해지, 변경	여권,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별표 8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

별표 8 제7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 8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11조제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의 수리

별표 8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의 소유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수리

별표 8 제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의2. 법 제115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의 소유에 관한 보고의 접수
별표 8 제50호 중 “제193조”를 “제19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8 제50호의2 및 제5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의2. 법 제193조제1항에 따른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
한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의 요구

50의3. 법 제193조제3항에 따른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공
제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 요구에 관한 업무
별표 9 제1호 단서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
음과 같이 한다.

2. 일반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가.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7항제1호	700
나. 보험회사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1호	10,000
다. 보험회사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 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 행자(법 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하 이 호에서 “보 험회사의 발기인등”이라 한다)	법 제209조 제6항제1호	2,000
라. 보험회사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1호	6,000
마. 보험회사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법 제209조 제6항제1호	1,200

바. 보험회사가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1호의2	6,000
사.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밟은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3호	2,000
아.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관청·총회 또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진실을 숨긴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4호	1,400
자.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사청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입사청약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5호	1,400
차.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정관·사원명부·의사록·자산목록·대차대조표·사업계획서·사무보고서·결산보고서,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6호	1,400
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57조제1항(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법 제64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7호	1000
타.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사원총회 또는 법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법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를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소집하거나 법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8호	2,000
파.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60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9호	2,000
하.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69조를 위반하여 해산절차를 밟은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10호	2,000
거.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72조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남은 자산을 배분한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11호	2,000
너.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73조에서 준용하	법 제209조	2,000

는 「상법」 제254조를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제6항제12호	
더.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13호	2,000
러.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를 위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14호	2,000
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7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19조 또는 제620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15호	2,000
버.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16호	1,400
서. 법 제8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7항제2호	500
어. 법 제85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7항제2호의2	700
저. 보험회사가 법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209조 제4항	1,800
처. 법인보험대리점이 법 제87조의3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7항제2호의4	1,000
커.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가 법 제83조제2항 또는 제100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	6,000
터. 법 제92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7항제3호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퍼. 법 제9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209조 제7항제4호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원으로 한다.
허. 보험회사가 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2호	10,000
고. 보험회사가 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그 보험 회사의 발기인등	법 제209조 제6항제17호	2,000
노. 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7항제5호	1,0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도.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법 제95조의2·제95조의5·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법 제209조 제6항제18호	1,400
로. 법 제95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7항제6호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모.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법 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09조 제7항제7호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보. 보험회사가 법 제95조의5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3항	5,000
소. 법 제95조의5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7항제7호의2	700
오. 보험회사가 법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6,000

	제1항제3호	
조. 보험회사가 법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그 보험 회사의 발기인등	법 제209조 제6항제19호	1,400
초. 법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7항제9호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코. 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7항제10호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토.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법 제101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09조 제1항제4호	6,000
포. 법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7항제11호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호. 법 제101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7항제11호의 2	1,000
구.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06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운용을 한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20호	2,000
누. 보험회사가 법 제106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5호	10,000
두. 보험회사가 법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	법 제209조	10,000

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제1항제6호	
루.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21호	2,000
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0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22호	2,000
부. 보험회사가 법 제110조의3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5항	1,000
수. 보험회사가 법 제1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의 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7호의3	10,000
우. 보험회사가 법 제1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7호의4	6,000
주. 법 제1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209조 제7항제12호	700
추. 보험회사가 법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8호	10,000
쿠.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23호	2,000
투. 보험회사가 법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9호	10,000
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24호	2,000
후. 보험회사가 법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10호	6,000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25호	1,400
느.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9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비치나 열람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26호	1,000
드. 보험회사가 법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또는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10호의2	10,000
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	법 제209조 제6항제27호	2,000

상하지 않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므. 보험회사가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11호	6,000
브.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28호	1,400
스. 보험회사가 법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12호	5,000
으.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29호	1,000
즈. 법 제12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공시한 경우	법 제209조 제7항제13호	700
츠.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30호	1,000
크.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6조를 위반하여 정관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31호	1,400
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32호	1,400
프. 보험회사가 법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법 제209조 제6항제33호	2,000
호. 보험회사가 법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13호	10,000
기. 보험회사가 법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법 제209조 제6항제34호	2,000
니. 보험회사가 법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법 제209조 제6항제35호	1,400
디.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30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36호	1,400
리. 보험회사가 법 제13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14호	10,000
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37호	2,000
비. 법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법 제132조·제179조·제192조제2항, 법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법 제136조·제179조·제192조제2항 및 법 제19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7항제14호	1,0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

		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시. 보험회사가 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15호	10,000
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38호	2,000
지. 법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법 제136조·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09조 제7항제15호	1,0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치. 법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법 제136조·제179조·제192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9조 제7항제16호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키.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청산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39호	1,400
티.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4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밟은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40호	1,400
피.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42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법 제144조(법 제1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41호	2,000
히.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51조제1항·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를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경우	법 제209조 제6항제42호	2,000
가. 법 제162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09조 제7항제17호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나.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209조 제6항 제43호	1,400
다.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보험계리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 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209조 제6항 제44호	1,400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①		제13조(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		법 제9조제2항제1호-----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		-----		
는 보험회사"란 총보험계약건수		-----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		-----		
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		
보험회사(이하 "통신판매전문		-----		
보험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		
<신 설>		제13조의2(소액단기전문보험회		
		사)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가. 생명보험업: 제1조의2제2		
		항제1호의 보험상품		
		나. 손해보험업: 제1조의2제3		
		항제6호, 제7호, 제9호 내지		
		제11호, 제13호 및 제14호의		
		보험상품		
		다. 제3보험업: 제1조의2제4		
		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상품		
		2.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신 설>

제16조의2(부수업무 등의 공고)

① (생 략)

②-----법 제11조의2제2항-----

-----.

<신 설>

보험기간: 2년 이하의 범위에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3.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금 상한액: 5천만 원

4.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500억
원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
0억원을 말한다.

제16조의2(부수업무 등의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1조의2제3항-----

-----.

제1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는 법 제2
조제2호 및 제175조제3항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1의
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

제29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② (생략)

③ 보험회사등은 전년도 불완전 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과는 별도로 별표 4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하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④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는 별도로 별표 4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 ⑦ (생략)

제59조(자회사의 소유)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도로 당
해 사업연도 내에 -----

-----.

④ -----

----- 별도로
당해 사업연도 내에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9조(자회사의 소유)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

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 14. (생략)

<신설>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사업

1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업무 및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하는 업무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하는 업무

19.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하는 업무

-----.

1. ~ 14. (현행과 같음)

14의2. 개인의 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및 악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0.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하는 업무

21. 삭 제

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
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하
는 업무

② (생략)

1. 외국에서 하는 사업(제1항제
1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한다)

2. (생략)

<신설>

3.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업무
가 아닌 업무로서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
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
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신설>

<삭제>

<삭제>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1. ----- (제2항-

2. (현행과 같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3의2. ---- 제2항 -----

③ 법 제115조제3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

설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사업
에 대한 투융자사업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산유동화업무 및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
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하는
업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자기구가 하는 업무

5.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
른 부동산투자회사가 하는 업
무

6. 「선박투자회사법」에 따
른 선박투자회사가 하는 업무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
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하
는 업무

8. 그 밖에 보험회사의 자산운
용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신 설>

③ (생 략)

1. ~ 3. (생 략)

④ (생 략)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회사 승인의 요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④ 법 제1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회사 승인의 요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3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① 법 제1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2. 생명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 중 하나 이상의 보험종목에 대해 허가받은 보험회사. 다만, 해당 보험종목을 취급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외부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는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없다.

1. 제63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2. 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

<신 설>

③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는 법 제1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공 및 접근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증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1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제71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① · ② (생략)

③ 법 제1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의 기재사항 중 보험요율에 관한 사항만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 ⑦ (생략)

<신설>

<신설>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통지) 법 제1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서면

2. 전화 · 우편 ·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

제75조의3(신계약의 금지 예외) 법 제14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국내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제86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법 제17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6. (생략) 7. <u>다른 법령</u>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업무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9조제1항부터 <u>제6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u>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u> 2. <u>자회사인 보험회사와의 합병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u> 3. <u>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u> 제86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u>이 법 및 다른 법령</u>----- ----- -----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u>제7항</u>---- ----- -----.
---	--